

무배당

하나변액유니버설보험 II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

# 확 인 서

무배당 하나변액유니버설보험 II 을 개발함에 있어서 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내용이 적합하고 보험료의 계산이 정확함을 확인합니다. 끝.

2006년 2월 일

하 나 생 명 보 험 주 식 회 사

선 임 계 리 사      윤 기 수

## 사업방법서 별지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종목의 명칭

무배당 하나변액유니버설보험 II

2. 보험대상자(피보험자) 가입나이,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 납입주기

보험대상자(피보험자) 가입나이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만15세 ~ 70세	종신	종신	월납

3.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1,000만원 이상

4.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금이 없음

5.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

가. 이 계약의 보험료는 계약시점에 매월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와 수시로 납입하는 추가납입보험료로 한다.

나. 기본보험료의 납입한도는 아래와 같다.

보험대상자(피보험자) 가입나이	기본보험료 납입한도
만15세 ~ 49세	보험가입금액의 1.0% ~ 2.0%
50세 ~ 59세	보험가입금액의 2.0% ~ 3.0%
60세 ~ 65세	보험가입금액의 3.0% ~ 4.0%
66세 ~ 70세	보험가입금액의 4.0% ~ 5.0%

다.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1회 최소납입금액은 각각 10만원 이상으로 한다.

- 라. 보험계약자(이하“계약자”라 한다)는 이 계약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본보험료와 주계약에 부가된 특약보험료를 계약 체결 후 2년 동안 최소한 24개월분(이하“의무납입기간”이라 합니다)이상 납입하여야 한다. (이하 24개월분의 기본보험료와 특약보험료를 합하여“의무납입보험료”라 한다.)
- 마. 제2회 이후의 보험료는 이 계약의 수금방법에 따라 수시로 납입할 수 있으며 의무납입보험료 납입 완료시까지 납입보험료에서 기본보험료와 특약보험료를 먼저 계산하여 반영하고 초과된 보험료에 대해서 추가납입보험료로 계산하여 반영한다.
- 바. 의무납입기간 경과 후부터는 해당월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경우에 한하여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 사. 의무납입보험료 납입 완료시까지 납입하는 보험료는 기본보험료와 특약보험료의 배수로 납입하여야 한다.
- 아. 의무납입보험료 납입이 완료되고 특별계정에 적립된 계약자적립금(계약자적립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적립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이하 “특별계정 내 계약자적립금”이라 합니다)에서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수금비 제외) 및 특약보험료(수금비 제외)의 합계액(이하“월대체공제액”이라 합니다)을 총당할 수 있으면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자.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는 최초 가입시 매월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의 납입총액 2배 이내로 한다.

## 6. 기본보험료 증액 및 감액에 관한 사항

- 가.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 기본보험료의 증액 또는 감액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본보험료의 증액 또는 감액에 대한 승낙여부를 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나. “가”에 의해 변경되는 기본보험료는 승낙일 이후 납입되는 기본보험료부터 적용하며, 기본보험료의 증액 또는 감액에 의한 월대체공제액의 변경된 사항은 승낙일 이후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부터 적용한다.
- 다. 기본보험료 감액이 있을 경우 감액된 부분은 해약처리하고, 회사가 지급해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지급한다.

## 7. 보험료의 차등적용 등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 가. 회사는 매월 기본보험료가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보험료의 0.5%를 할인하여 이를 영수한다.
- 나. 회사는 매월 기본보험료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보험료의 1.0%를 할인하여 이를 영수한다.
- 다. “가” 및 “나”의 할인은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 8. 보험가입금액 증액 및 감액에 관한 사항

- 가.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 보험가입금액의 증액 또는 감액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가입금액의 증액 또는 감액에 대한 승낙여부를 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나. “가”의 승낙일 통보 후 증액되는 보험가입금액의 적용은 승낙일 이후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 다. 보험가입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될 경우 증액 또는 감액된 보험가입금액에 적용하는 기본보험료를 승낙일 이후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 9.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에 관한 사항

- 가.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은 특별계정 내 계약자 적립금에서 월대체공제액을 충당할 수 없게 된 월계약해당일로부터 그 월계약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한다.
- 나. 의무납입보험료 납입완료시(계약 체결후 24개월)까지는 월계약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해당월 말일까지 기본보험료와 특약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았을 경우 그 월계약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월에 해당하는 기본보험료와 특약보험료가 「 5.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의 “사” 」에 의해 미리 납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월 분의 기본보험료와 특약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간주한다.

## 10.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관한 사항

가. “이미 납입한 보험료”란 계약자가 회사에 실제로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말한다. (특약보험료 제외)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약관 제7조(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거나, 약관 제43조(계약자적립금의 인출)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을 중도 인출한 경우, 「11. 최저사망보험금에 관한 사항」에서 정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와 중도인출 또는 감액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한다.

- 인출 이후 「이미 납입한 보험료」

$$= \text{인출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times \frac{\text{인출 시 계약자적립금} - \text{인출금액}}{\text{인출 시 계약자적립금}}$$

단, 인출금액은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임

- 감액 이후 「이미 납입한 보험료」

$$= \text{감액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times \frac{\text{감액 후 계약자적립금}}{\text{감액 전 계약자적립금}}$$

다. “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산하는 경우의 「인출 직전(감액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라 함은 해당 인출(감액) 발생 전에 감액 및 인출이 발생한 경우 “나”의 방법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한다.

라. 계약자가 해당월 특약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특별계정에 적립된 계약자적립금(이하 “특별계정 내 계약자적립금”이라 합니다)에서 월대체공제액으로 공제한 경우 그 공제된 특약보험료(수금비 제외)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차감 한다.

## 11. 최저사망보험금에 관한 사항

최저사망보험금이라 함은 특별계정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 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서 사망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한다.

## 12. 특별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

가. 특별계정의 운용 및 평가

(1) 변액보험의 특별계정별로 운용되는 자산(이하“펀드”라 한다)은 일반보험의 자산

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자산운용실적이 계약자의 적립금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매일 평가한다.

- (2) 특별계정운용보수 및 특별계정수탁보수는 특별 계정과 분리하여 관리한다.
- (3) 특별계정운용보수 및 특별계정수탁보수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최고한도 이내에서 회사가 결정하며, 변경된 특별계정운용보수 및 특별계정수탁보수는 변경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모든 계약에 대하여도 변경일부터 동일하게 적용한다.

#### 나. 펀드의 유형 및 수

(1) 펀드의 유형은 다음 각 호로 합니다.

- ① 단기채권형 : MMF형 펀드, 단기채권 (편입일 현재 만기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채권 위주)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콜론(Call Loan),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및 기타 제예금 등의 단기 유동성 금융자산에 순자산(NAV)의 90% 이상 투자하여 안정성과 유동성을 추구한다.
- ② 채권형 : 채권[전환사채,교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 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후순위채권 포함)을 포함한다.], 채권형 펀드, 대출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유동성 자산 및 수익증권 등에 순자산의 90% 이상 투자함으로써 수익을 추구한다.
- ③ 주식성장형 : 채권[전환사채,교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 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후순위채권 포함)을 포함한다], 채권형 펀드, 대출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30%이내로 투자하고, 주식(코스닥주식 등 포함), 주식형 펀드 및 주식 관련 파생상품에 순자산의 90%이내를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 및 수익증권 등에 투자한다.
- ④ 글로벌혼합형 : 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등 주식관련 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후순위채권 포함)을 포함한다], 채권형 펀드, 대출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30%이내로 투자하고, 글로벌 주식형 및 채권형 펀드 등에 순자산(NAV)의 90%이내로 투자하여 전 세계 주식 및 채권시장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를 가지도록 운용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 및 수익증권 등에 투자한다.
- ⑤ 실크로드 혼합형 : 국내·외 주식, 주식관련 파생상품, 주식형 수익증권(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에 순자산(NAV)의 90%이내에서 투자하고, 나머지는 국내·외 우량채권, 채권관련 파생상품, 채권형 수익증권, 대출 및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합니다. 단, 주식 등에의 투자는 아시아 등 이머징 마켓(Emerging Market) 위주로 운용하되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합니다.



- (2) “(1)”에서 운용재산인 유가증권 등의 가격변동 및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1)”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 또는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를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3) “(1)”의 투자 대상은 보험업법 및 간접투자자산운용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서 운용되고 그 관계법령이 제·개정될 경우 대체 또는 변동될 수 있다.

다. 펀드 자동재배분

- (1) 계약자는 계약시 펀드 자동재배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일부터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 단위(6개월, 12개월 단위 중 택일)로 계약체결시 선택한 펀드의 투입비율로 자동 재배분 된다.
- (2) 보험기간 중 펀드의 투입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펀드의 투입비율에 따라 자동 재배분 되며, 이 경우에도 계약일부터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 단위(6개월, 12개월 단위 중 택일)로 자동 재배분 된다.
- (3)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4) 펀드 자동재배분은 계약일부터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 단위(6개월, 12개월 단위 중 택일)로 실행되며, 실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에 실행된다.

라. 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

- (1) 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시 “나”에서 규정한 펀드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한 펀드가 2개 이상인 경우 펀드 각각에 대하여 **펀드별 투입비율**을 선택할 수 있으며, 매년 12회의 범위에서 펀드별 투입비율의 변경을 회사에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 (2) 추가납입보험료 투입비율의 변경  
추가납입보험료는 계약자의 지정이 있을 경우 지정한 비율에 따라 해당 펀드로 투입되며, 지정이 없을 경우에는 **펀드별 투입비율**에 따라 해당 펀드에 투입된다.
- (3) 특별계정투입보험료(납입보험료에서 부가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이하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라 한다.)는 “(1)” 또는 “(2)”에서 설정한 펀드별 투입비율에 따라 분산 투입된다.
- (4) 계약자의 펀드변경
  - ① 계약자는 매년 12회 이내의 범위에서 회사에 서면으로 펀드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펀드로** 이전을 회사에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단, 펀드 적립금의 이전은 10만원 이상으로 한다.
  - ② 회사는 “①”에 의한 펀드의 변경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경요구일 + 제5영업일」 기준으로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에 따른다.
  - ③ 회사는 천재·지변, 유가증권 시장의 폐쇄·휴장, 유가증권 등의 매각지연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②”에서 정하는 날까지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 및 향후 이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험재산이 처분되는 날부터 제5영업일을 기준으로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을 따른다.

- ④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한 계약자의 펀드 변경 요구는 「펀드자동재배분 실행 예정일 직전 5영업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 ⑤ 회사는 “①”에서 정한 펀드 이전 요구를 접수한 때에는 계약자에게 적립금의 0.1%와 2,000원 중 적은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②”의 현금 이전시 공제한다.

마. 자산의 평가방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1) 특별계정의 자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법에 의해서 평가하여야 한다.
- (2) 시가법은 특별계정별로 적용하여야 한다.
- (3)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 및 운용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바. 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에 관한 사항

특별계정의 좌수 및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1) 좌수

특별계정 설정시 1원을 1좌로 하며 그 이후에는 매일 좌당 기준가격에 따라 좌단위로 특별계정에 이체 또는 인출한다.

(2) 좌당 기준가격

특별계정의 좌당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되,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하며 최초판매개시일의 기준가격은 1,000좌당 1,000원으로 한다.

$$\text{좌당 기준 가격} = \frac{\text{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text{특별계정의 총 좌수}}$$

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라 함은 당일 특별계정의 총자산에서 특별계정 운용보수, 특별계정 수탁보수, 최저사망보험금보증비용 및 최저연금적립금보증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사. 초기투자자금

- (1) 회사는 특별계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자금을 이체하여 특별계정을 설정할 수 있다.
- (2) “(1)”에서 정한 초기투자자금의 운용은 특별계정별로 다음 각호에 의한다.
  - ① 초기투자자금의 규모는 일반계정 총자산의 1%와 100억원 중 적은 금액을 최

고한도로 한다.

- ② “(1)”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 자산이 분기 말 기준으로 초기투자자금의 100분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기투자자금을 특별계정의 기준가격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일반계정으로 상환한다.
- ③ “①” 및 “②”의 규정에 의한 초기투자자금의 이체 또는 상환은 현금으로 한다.

아. 특별계정의 제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회사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8조 제2항에 의한 신탁보수, 제86조 제2항에 의한 제비용 및 보수, 동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한 회계감사비용, 제100조 제5항에 의한 자산운용보고서 작성·제공비용 및 제149조에 의한 투자증권 평가비용을 특별계정자산에서 인출할 수 있다.

자. 특별계정의 폐지

(1)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특별계정을 폐지할 수 있다.

- ① 당해 각 특별계정의 자산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자산가치의 변화로 인해 효율적인 자산 운용이 곤란해진 경우
- ② 당해 각 특별계정의 운용대상이 소멸할 경우
- ③ “①” 내지 “②”에 준하는 경우

(2) 회사는 “(1)”에서 정한 사유로 각 특별계정을 폐지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폐지사유, 폐지일까지의 계약자적립금과 함께 펀드 변경 선택에 관한 안내문 등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계약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다만, 계약자가 펀드 변경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유사한 펀드로 이동시킬 수 있다.

(3) 회사는 “(1)” 및 “(2)”에서 정한 사유로 계약자가 펀드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펀드변경에 따른 수수료를 계약자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연간 펀드의 변경 횟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 13. 계약자적립금의 계산

이 보험의 계약자적립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14.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의 자금이체

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의 정해진 금액을 회사가 정한 날에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

(1) 보험료 등의 납입이 있는 경우

① 제1회 보험료 : 초회보험료에서 주보험의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 및 특약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② 제2회 이후 보험료 : 납입보험료에서 주보험 및 특약의 수금비를 제외한 금액

③ 추가납입보험료 : 추가납입보험료 중 추가납입보험료의 유지비, 수금비를 제외한 금액

단,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18. 기타의 “가”」에 따라 이체한다.

(2)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의 상환이 있는 경우

(3)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의 정해진 금액을 회사가 정한 날에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한다.

(1) 사망보험금의 지급이 있는 경우

(2) 중도인출이 있는 경우

(3) 보험계약대출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지급이 있는 경우

(4) 계약이 소멸 또는 해지된 경우

(5) 매월 계약해당일에 월대체공제액을 충당하는 경우

(단, 월대체공제액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6)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다. 일반계정과 특별계정간의 이체에 따른 손익처리

(1) 일반계정과 특별계정간의 이체는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하며 이체금액은 특별계정의 투자수익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한다.

(2) “(1)”의 규정에 의한 이체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실제 이체하는 날까지 실적을 적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은 일반계정 주주지분에서 처리한다.

## 15. 계약자적립금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회사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년도 기준 년 12회 한도로 월 2회까지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으며,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인출할 당시 해약환급금(단, 보험계약대출적립금을 제외한 금액)의 50%를 최고 한도로 한다. 단, 인출금액은 10만원 이상 만원 단위로 한다.

나. 계약자적립금 인출시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적은 금액 이내에서 회사가 정한 금액으로 하며 계약자적립금에서 차감한다.

다.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출금액은 인출 후 특별계정 내 계약자적립금이 500만원 이내에서 회사가 정한 금액 또는 인출 당시 2개월분 월대제공제액 중 큰 금액을 최저한도로 한다.

라. 인출 후 이미 납입한 보험료 금액은 「10.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관한 사항 “나”」에 따라 계산한다.

마. 중도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우선적으로 가능하며, 추가납입 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의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 가능하다.

#### 16.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기본보험료(특별계정 내 계약자적립금에서 월대제공제액을 충당할 수 없게 될 날로부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기본보험료. 단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를 포함한다)에 「예정이율 + 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나. 해지계약의 계약자적립금은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하며, 부활(효력회복)시에는 해지된 날부터 부활(효력회복) 승낙일까지 예정이율로 부리하여 적립한 적립금과 연체된 보험료의 연체이자 중 특별계정 투입보험료 해당액[자연식 위험보험료 및 사업비(수금비 포함), 특약보험료 제외, 부활(효력회복)일부터 승낙일까지 예정이율로 계산한 이자포함] 등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재투입하여 계약자적립금으로 한다.

다. “나”의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부활(효력회복)승낙 후 연체된 보험료가 완납된 경우에는 연체된 보험료 완납일을, 연체된 보험료 완납 후 부활(효력회복) 승낙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효력회복)승낙일로 한다.

## 17.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 가. 계약자는 이 보험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다.
- 나. 보험계약대출금액은 대출일을 기준으로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한 후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1.5%」로 부리하여 보험계약대출적립금 계정에 적립한다. (단, 보험계약대출적립금은 「13. 계약자적립금의 계산」의 계약자적립금에 포함되며, 대출시 펀드별 분배 비율은 대출일 기준 펀드별 적립금 비율로 한다)
- 다. 계약자는 “가”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다. 단, 보험계약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은 상환일에 일반계정에서 상환일 기준 펀드별 분배금액비율에 따라 특별계정으로 투입하고 보험계약대출적립금에서는 제외한다. 또한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에서 상계하는 방법으로 회수한다.

## 18. 기타

### 가. 납입보험료의 처리에 관한 사항

- (1)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이 계약의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를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
- (2) “(1)”에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 ① 제1회 보험료는, 청약철회기간 내에 승낙된 경우 청약철회기간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로, 청약철회기간이 지난 후 승낙된 경우에는 승낙일로 한다. 이 경우 이체금액은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를 제1회 보험료 납입일부터 청약철회기간 종료일의 다음날까지는 예정이율로 부리적립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특별계정의 투자수익률을 적용한다. 단 선택한 펀드가 2개 이상인 경우 해당펀드의 투자수익률에 대하여 펀드투입비율로 가중 평균한 투자수익률을 적용한다.
  - ②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는 납입일을 이체사유발생일로 한다.

나. 이 보험에 부가되는 선택특약은 일반계정에서 운용한다.

다. 계약자적립금 등의 변동사항 통지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험계약체결이후 보험기간 동안 반기별로 보험계약의 변동내용을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보장계약 보험가입금액에 관한 사항
- (2) 계약자적립금 변동에 관한 사항
- (3) 납입보험료 누계 및 해약시 해약환급금 등

라. 결산사항의 통지

회사는 사업년도 종료시 특별계정의 결산사항을 감독원에 보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특별계정 총좌수
- (2) 특별계정 기준가격
- (3) 특별계정 자산총액
- (4) 특별계정 자산운용 연평균 수익률
- (5) 특별계정 자산구성내역 및 비율
- (6) 특별계정 자산구성비율 변동내역
- (7) 특별계정운용보수, 특별계정수탁보수

마. 회사는 상품명칭 앞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에 기재할 수 있다.

바. 한 건의 계약으로 여러 계좌를 가입할 경우에는 한 계약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및 보험계약 청약서로 운영할 수 있다.

사. 무배당 연금전환특약 전환에 관한 사항

- (1) 무배당 연금전환특약의 보험료는 전환일 현재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나이에 의하여 계산된다.
- (2) 무배당 연금전환특약은 전환시의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및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아. 판매채널에 관한 사항

이 보험의 판매채널은 보험업감독규정 제4-14조에서 정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을 제외한 범용으로 한다.

자. 재간접투자기구 관련 공시에 관한 사항

회사는 「12. 특별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 의 “나”」에서 정한 펀드 중 다른 간접 투자기구(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그 사실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특별계정수탁보수 및 특별계정운용보수 이외에 해당간접투자기구(펀드)에 투자함으로써 별도의 수수료(판매보수 포함)가 추가적으로 부과된다는 사실 및 그 추가 수수료에 대해 안내자료 등에 기재한다.